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보고서





<mark>한영회계법인</mark>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07241

Tel: 02 3787 6600 Fax: 02 783 5890 ey.com/kr Ernst & Young Han Young Taeyoung Building, 11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07241 Korea

Tel: +82 2 3787 6600 Fax: +82 2 783 5890 ev.com/kr

종합재무제표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보고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회 귀중

우리는 첨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학교')의 2016년 2월 29일 기준 종합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종합운영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학교와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합의된 절차 업무수행기준에 따라수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학교의 종합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된 것이며 본 보고서는 학교의 정보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학교와의 합의에 따라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가 서울대학교의 종합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2. 학교의 종합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이용한 각 부문의 개별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3. 각 부문간의 내부거래와 원장상의 금액의 대사 및 각 부문별 재무제표의 합산 및 내부거래의 제거에 대한 계산검증

상기 합의된 절차를 수행한 결과 학교의 종합재무제표는 상기의 확인사항과 관련하여 예외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우리는 학교의 종합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와 합의한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검토업무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학교에 보고할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 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항목에만 관련된 것이며, 학교의 전체 재무제표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2016년 10월 26일